



CHILD CARE SUBSIDY PROGRAM (CCSP)

CCSP 승인 또는 변경 서신
CCSP Award or Change Letter

콜 센터 전화번호	콜 센터 팩스번호
수혜자/의뢰인 ID 번호	날짜

계절관련 탁아서비스

직업관련 탁아서비스

귀하의 탁아서비스 수혜자격이 _____부터 _____까지 월 공동부담금 지불과 함께 승인되었습니다.

귀하의 탁아서비스 원조 프로그램(Child Care Subsidy Programs, CCSP) 권리와 책임에 대해 첨부한 주요 정보를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위해 _____에 대한 탁아서비스가 승인되었습니다.

직업 승인한 WorkFirst 활동 학교 기타: _____

다음을 위해 _____에 대한 탁아서비스가 승인되었습니다.

직업 승인한 WorkFirst 활동 학교 기타: _____

은(는) 동안 다음과 같이 탁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나절 종일 시간

은(는) 동안 다음과 같이 탁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나절 종일 시간

은(는) 동안 다음과 같이 탁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나절 종일 시간

은(는) 동안 다음과 같이 탁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나절 종일 시간

_____에서 _____까지 귀하가 지불할 월 공동부담금은 \$15 입니다.

_____에서 _____까지 귀하가 지불할 월 공동부담금은 \$_____입니다.

공동부담금은 귀하의 가족 수와 월소득에 근거해 산정되며, 귀하가 탁아서비스 제공자에게 바로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입니다.

1. 가족 수 _____
2. 총근로소득(세금 공제 전) \$ _____
3. 자영업 소득(허용가능한 금액 공제 후) \$ _____
4. 불로소득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액(SSI, SSA, 수령한 아동양육비, 일시 지불금) \$ _____
5. 총소득(위의 2 ~ 4 번 합산) \$ _____
6. 법원 명령으로 지불한 아동양육비 \$ _____
7. 확정된 가산 소득 (5 번 금액에서 6 번 금액을 뺀) \$ _____
(가산 소득(Countable income)은 수혜자의 수혜자격과 공동부담금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8. 공동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가산 소득

월공동부담금

연방 빈곤 수준(FPL)의 82% 이하	\$15
FPL 의 82% ~ 137.5%	\$65
FPL 의 137.5% ~ 200%	

첨부한 공동부담금 산정표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공동부담금은 변경됩니다(WAC 170-290-0085 준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승인기간이 종결되었음. | <input type="checkbox"/> 가족 수가 변경되었음. |
| <input type="checkbox"/> 소득이 감소되었음. | <input type="checkbox"/> 기타(설명요): _____ |

콜 센터 전화번호

콜 센터 팩스번호

공동부담금 산정표

유효일: 09/01/2013

가산소득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가족 수:	FPL 의 100%	FPL 의 175% 이상	FPL 의 0% ~ 82%		82% ~ 137.5%		137.5% ~ 200%		FPL 의 137.5%
1	\$ 958	\$1,916	\$0	\$786	\$787	\$1,317	\$1,318	\$1,916	\$1,317
2	\$1,293	\$2,586	\$0	\$1,060	\$1,061	\$1,778	\$1,779	\$2,586	\$1,778
3	\$1,628	\$3,256	\$0	\$1,335	\$1,336	\$2,239	\$2,240	\$3,256	\$2,239
4	\$1,963	\$3,926	\$0	\$1,610	\$1,611	\$2,699	\$2,700	\$3,926	\$2,699
5	\$2,298	\$4,596	\$0	\$1,884	\$1,885	\$3,160	\$3,161	\$4,596	\$3,160
6	\$2,633	\$5,266	\$0	\$2,159	\$2,160	\$3,620	\$3,621	\$5,266	\$3,620
7	\$2,968	\$5,936	\$0	\$2,434	\$2,435	\$4,081	\$4,082	\$5,936	\$4,081
8	\$3,303	\$6,606	\$0	\$2,708	\$2,709	\$4,542	\$4,543	\$6,606	\$4,542
9	\$3,638	\$7,276	\$0	\$2,983	\$2,984	\$5,002	\$5,003	\$7,276	\$5,002
10	\$3,973	\$7,946	\$0	\$3,258	\$3,259	\$5,463	\$5,464	\$7,946	\$5,463
		수혜자격 없음	공동부담금 \$15 지불		공동부담금 \$65 지불		가산 소득에서 FPL 의 137.5% 금액을 빼고, 0.50 를 곱한 후 \$65 를 더함		

CCSP 수혜자격 및 공동부담금 산정 단계

1. 총소득을 결정합니다. 총소득은 총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가산소득을 결정합니다. 가산소득은 총소득에서 지급한 아동양육비 금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3. 가산소득을 칼럼 2에 있는 금액과 대조합니다. 금액이 더 많으면 수혜자격이 없습니다. 가산소득이 칼럼 2에 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정확한 소득 범위와 공동부담금을 칼럼 3, 4 또는 5에서 확인합니다.

CCSP 권리와 책임

본인에게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이 본인의 수혜자격과 정확한 탁아서비스 비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책임. • WAC 170-290-0125 요건을 충족하는 탁아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거나 탁아서비스를 본인 스스로 준비할 책임. • 본인의 CCSP 월 공동부담금을 탁아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이 바로 지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할 책임. 이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탁아서비스 지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CCSP 수혜자격을 유지하는데 수혜자격보장 검토절차에 협조할 책임. 본인은 수혜자격보장 요건에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확정될 경우 CCSP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확정된 날짜로부터 30 일간 또는 수혜자격보장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혜자격이 없습니다. • 사기행위 조기발견(FRED) 조사원에게 협조할 책임. 조사원에게 협조(예: 요청한 정보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탁아서비스 제공자에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5 일 이내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할 경우 CCSP 허가 직원에게 변경사항을 10 일 내에 보고할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맡기는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 WorkFirst 보조금 또는 아동양육비 금액 변경을 포함하여 가족 소득이 변경될 경우 ▶ 부모나 배우자 또는 거주인이 이사를 나갔거나 들어옴으로 가족 인원수가 변경될 경우 ▶ 직업, 학교 또는 승인된 TANF 활동에 어떤 변경이 있을 경우 ▶ 자택/친척 탁아서비스 제공처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 자택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 아동양육비 지불 의무가 변경될 경우 • 본인의 탁아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요청한 모든 정보에 즉시 답신할 책임. 본인의 자택/친척 탁아서비스 제공자는 당국에 모든 신원조회 결과가 접수되지 않으면 수혜자에게 제공한 탁아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받을 수 없습니다. • 탁아서비스 제공자의 동의 아래 본인이 탁아비를 본인 스스로

<p>CCSP 허가 직원에게 통보할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이 본인의 탁아서비스 승인을 변경할 경우 10 일 이내에 해당 탁아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할 책임. • 직업관련 탁아서비스: 다음에 대해 본인이 알게 된 계류 중인 사건 또는 유죄 판결건이 있으면 24 시간 이내 탁아서비스 허가 직원에게 보고할 책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자택/친척이 제공하는 탁아서비스 2) 직업관련 탁아보육의 경우에 한해, 아이를 맡기는(집이 아닌) 탁아서비스 제공처에 16 세 이상의 사람이 사는 경우 	<p>지불하는 일 외에는 본 양식 앞장에 기재된 이유 외 자녀를 탁아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양식 앞장에 승인된 활동 외에 어느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고, 주정부에서 본인의 탁아비를 지불해 주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먼저 탁아서비스 허가 직원에게 연락해야만 합니다.</p> <p>변경사항을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초과지불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보다 더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p>
---	---

CCSP 권리와 책임(계속)

본인은 다음을 이해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본인의 인종, 피부색, 정치적 신념, 국적, 종교, 나이, 성별, 장애 또는 출생지에 관계 없이 예의바르고 공정하게 대우 받을 것입니다. • 본인은 본인의 CCSP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혜자격 여부를 결정받을 것입니다. • CCSP 혜택과 관련해 본인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서면으로 통지받을 것입니다. • 본인에 관한 정보는 연방규정과 주정부 규정에서 요구할 경우 다른 기관과 공유할 것입니다. • WAC 170-290-0120 에서 기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정부에서 해당 혜택을 감소 또는 중지하기 전에 최소한 10 일 이내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 CCSP 케이스와 관련된 결정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본인의 심의회 요청 권리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해당 책임자 또는 행정관에게 본인의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나 활동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합당한 시간 내에 통역관이나 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탁아서비스 제공자가 WAC 170-290-0125 의 요건에 충족할 경우 본인의 탁아서비스 제공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사기행위 조사과(Office of Fraud and Accountability, OFA)에서 나온 사기행위 조기발견(FRED) 조사원에게 다른 시간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원을 본인의 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수혜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원에게 협조(예: 요청한 정보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의회 권리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P O Box 42489, Olympia, WA 98504-2489 로 연락해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받기를 원하면 심의회는 이 조치 유효일 전에 또는 이 조치 통지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10 일 전에 신청함. 또는
-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신청함.

귀하는 심의회에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귀하가 선택한 사람을 대동해 귀하를 대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무료 법적 조언이나 대변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